

2025년 설 명절 공직기강 복무점검 결과 보고

2025. 02.

2025년 설 명절 공직기강 복무점검 결과 보고

1 목 적

- 설 명절을 맞아 반부패·청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시행한 자체 복무점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 '25년 연간 감사 및 업무계획(안)(감사실-####, '24.##.##.)
- '25년 설 명절 공직기강 복무점검 계획(안)(감사실-###, '25.##.##.)
- 내부감사협의회 심의 결과 보고 (감사실-###, '25.##.##.)

3 점검 개요

- (점 검 명) 설 명절 공직기강 복무점검
- (점검기간) '25. 1. 20.(월) ~ 1. 23.(목)
- (점검대상) 전 임직원
- (감 사 반) ♣장 4명

구분	성명	업무 분장	참여기간
반장	팀장 A	총괄	4일
반원	차장 B	· 감사자료 분석 및 검토	4일
	차장 C	· 법령 및 규정 위반 여부 점검	3일 (###. 출장)
	과장 D	· 근무 상태 및 사무실 보안 점검	4일
	과장 E	· 점검 결과 정리 및 보고	4일

4 중점 점검사항

- 직무관련 금품·향응·편의 수수, 부당 사익 추구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해태 및 품위훼손
- 근태관리기준 및 복무 위반 등 기강 해이 사례 점검
-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 실태 점검

5 점검 결과

가. 복무점검 경과

- 자체 복무점검 계획 수립 ('25.#.##.)
 - 점검내용 : 행동강령 위반, 품위훼손, 복무 위반 등 조사
 - 대상/장소 : 전 임직원/공항청사, 합동청사 등
 - 청렴일기예보 발행 ('25.#.##.)
 - 주요내용 : 복무점검 배경, 기간 및 중점점검 사항 안내 등
 -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점검 ('25.#.##. ~ #.##.)
 - 점검내용 :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당 사익추구 등
 - 점검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설 명절 관계부처 합동 공직기강 복무점검 ('25.#.##.)
 - 점검내용 : 설 연휴특별교통대책 운영 현황, 설 특별수송 대책반 근무실태, 출국장 검색대 운영현황, 제방빙 운영 현황 등
 - 참석자 : 국무조정실 #명, 국토교통부#명, 공사 감사실 #명
 - 점검결과 : 특이사항 없음
- * 감사실-###('25.#.#) 설 명절 공직기강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보고

나. 세부 점검 현황

- 금품·향응수수, 부당 사익추구 등 행동강령 위반 및 업무처리 해태, 품위훼손 위반 사례 없음
- 임직원 복무 점검 ('25. #. ##. ~ #. ##.)
 - 점검내용
 - 공항청사·합동청사 임직원 출근시간 준수 점검
 - 근태불량 피신고자 및 출근시간 미준수자 대상 근태 점검
 - 점검결과
 - 유연근무자 중 출근 시작시간 이후 출근자 #명 확인
 - 근태불량 피신고자 #명(F) 및 출근시간 미준수자 #명 중 #명(G)의 근태 다수 위반 확인
- ☞ 신분상 처분 요구(경징계(견책) 2, 주의 2)
 - * 근태 다수 위반자 #명은 '견책', 출근시간 미준수자 #명은 '주의' 처분 요구
- ☞ 행정상 처분 요구(시정)
 - * 근태 다수 위반으로 부족한 근무시간(F : #시간 ##분, G ##시간 ##분)에 대해 근태 등 소급 처리 시정 요구
- 업무 인계·인수 실태 점검 ('25. #. ##. ~ #. ##.)
 - 점검내용 :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인수인계서' 작성 실태 점검
 - * '사무 및 기록관리 규정' 제5조(업무의 인계·인수)에 의거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 서식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함.
 - 점검결과 : 총 ###건중 ##건은 작성 불필요 (동일 또는 신설부서)
##건은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 ##건은 별도방식(서류, 핸드 메일 등)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전자문서는 미등록

전체	인수인계 불필요		인수인계 필요	
	동일부서 발령	신설부서 발령	완료	미등록
###건	##건	##건	##건	##건

☞ 미작성 ##건 모두 '사무인수인계서(전자문서)' 작성 완료

6 처분요구 : 경징계(견책) 2, 주의 2, 시정

지적요지	부서(지적당시)/관련자	처분요구
근태관리 기준 위반	◇팀 F 등 2명	신분상 처분 경징계(견책) 2
	☯팀 H 등 2명	신분상 처분 주의 2
	◆처 (◁팀)	행정상 처분 시정(일반)

* 관련자 상세 명단 및 처분요구 내용은 붙임.2 처분요구서 참조

7 기타사항

1. 이행관리계획

- 처분요구일로부터 신분상 처분 30일 및 재정상·행정상 처분 60일 이내 처분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미 이행 사항에 대한 집행 독촉장 발부 예정
- 이행관리 담당자 : ♠팀 차장 B

2. 추가 감사가 필요한 사항 : 없음

3. 향후 추진계획

- '25. #. ##. : 복무점검 결과 보고
- '25. #. #. : 감사위원회 심의 (징계에 관한 사항)
- '25. #. #. : 경영 공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번호	2025-000	처분요구일자	2025-00-00
처 분 종 류	경징계(견책)(2), 주의(2), 시정		
관 계 부 서	☞처(☞팀)		
제 목	근태관리기준 위반		

지 적 내 용

1. 업무 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 직원은 「인사규정」 제36조에 따라 법령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취업규칙」 제7조1)에 따르면 “직원의 업무 개시 및 종료시간은 연중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따라 “생활의 조화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 촉진”에 부응하여 시행 중인 유연근무는 같은 규칙 제7조의3²⁾ 및 「근태관리기준」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직원은 「취업규칙」 제14조³⁾에 따라 지정된 근무시간 시작 전 근무지로 출근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6조⁴⁾ 및 「근태관리기준」에 따라 휴가, 유연근무 등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근태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

-
- 1) 취업규칙 제7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 개시 및 종료시간은 연중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각각 「교대근무지운영 및 근무지침」 및 「단시간근로제 운영규정」에 따르며, 기타 업무의 성격 또는 업무의 능률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업무 개시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2) 취업규칙 제7조의3(유연근무제 등) ④ 유연근무제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3) 취업규칙 제14조(출근) 직원은 지정된 근무시간 시작 전에 근무지에 출근하여야 한다.
- 4) 취업규칙 제16조(근무상황의 관리) ② 직원이 출장, 휴가, 조퇴, 외출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근태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유연근무자 정시출근 점검

A 등 3명은 2025. #. ##.(#) 시행한 정시출근 점검결과 [표 1]과 같이 근태승인권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지정된 근무 시작시간 보다 늦게 출근하여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취업규칙」 제7조, 제14조를 위반하였다.

[표 1] 정시출근 점검결과 (2025. #. ##.(#))

이름	소속(점검 시)	직위	근무시간	출근 시간	출근 지각 시간
A	☯팀	♣	##:## ~ ##:##	##:##	#분
B	◆팀	♣	##:## ~ ##:##	##:##	#분
C	◁팀	⬆	##:## ~ ##:##	##:##	#분

위 관련자들이 평상시에는 정시에 출근하였는지를 20##. #월부터 20##. #월까지 출퇴근 기록(차량 입출차 기록)을 확인한 결과 B은 [표 2]와 같이 유연근무를 사용하면서 ###차례 (총 지각시간 ##시간##분)에 걸쳐 지각을 반복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2] 정시출근 점검결과(####.#.#. ~ ####.#.#.)

이름	소속	직위	유연근무 시간	지각 건수	총 지각시간	평균 지각시간
B	◆팀	♣	##:## ~ ##:##	###건	##시간 ##분	##분 ##초

나. 근태불량 익명 신고에 대한 점검

근태불량으로 #####. #. ##.(#) 익명신고가 접수된D의 20##. #월부터 20##. #월까지 출퇴근 기록(차량 입출차 기록)을 확인한 결과 [표 3]과 같이 유연근무를 사용하면서 ##차례 (총 지각시간 #시간##분)에 걸쳐 지각을 반복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정된 근무 시작시간 보다 늦게 출근하여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취업규칙」 제7조,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다.

[표 3] 정시출근 점검결과(#####.#.#. ~ #####.#.##.)

이름	소속	직위	유연근무 시간	지각 건수	총 지각시간	평균 지각시간
D	♠ 팀	●	##:##~##:##	##건	#시간 ##분	#분 #초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A는 복무점검일(2025. #. ##.(#))에 해무로 인한 차량 서행으로 지각하였으며 출근 후 근무시작시간을 #시##분으로 변경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C은 짙은 안개로 인해 버스의 감속 운행으로 지각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그러나 유연근무 점검대상자 ##명중 ##명은 평시보다 악화된 당일 기상에도 불구하고 정상 출근하였던 점과 지각이 예상되는 경우 근무 시작 전에 근태승인권자에게 보고(전화, 카톡, 메시지 등)를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일 기상상황으로 지각하였다는 당사자들의 소명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B은 총 ###건의 지각에 대해 본인의 책임이라고 인정하면서, ● 유연근무를 사용하였으며, ▽ 못해 지각을 하게 되었고, 업무종료 이후 PC-OFF 전까지 ##분 이상 초과 근무를 해서 1일 8시간 근무를 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출근시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지속적으로 지각을 하게 된 것 같다고 소명하였고 앞으로는 성실히 회사 생활에 임하겠다고 하였다.

D은 총 ##건에 지각에 대해 유연근무를 변경하지 못했으나 정해진 근무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시간보다 평균 ##분 후에 퇴근하여 공항청사에서 출차 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

우에는 근태승인권자에게 사전에 허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각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징계 요구 양정 검토

B, D은 공항공사 직원으로서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복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무단 지각을 하였다. 또한, 지각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근태승인권자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 즉시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 또한 위반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36조(성실의 의무), 「취업규칙」 제7조 및 제14조(출근), 「근태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5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징계 양정에 있어 무단 지각의 비위 정도는 비교적 가벼우며, 평균 지각 시간이 각각 약 #분, ##분으로 짧았던 점을 감안할 때 경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 경징계(견책)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① 사장(♠처장)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각을 하여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인사규정」 제36조, 「취업규칙」 제7조, 제14조를 위반한 관련자에게 「경징계」(견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징계(견책)]

[관련자]

소속 (지적 당시)	직위	성명	관리(근무)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팀	●	D	####. #. #. ~ ####. #. #.	● 유지관리 업무	⊗팀
◆팀	♣	B	####. #. #. ~ ##	▲ 교체 및 개선	좌동

② 사장(♠처장)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인사규정」 제36조, 「취업규칙」 제7조, 제14조를 위반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소속 (지적 당시)	직위	성명	관리(근무)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팀	↑	C	####. #. #. ~ ##	☼관리	좌동
☯팀	♣	A	####. #. #. ~ ##	☆ 협의 및 검토	좌동

③ 사장(♠처장)은 지각을 반복하여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들의 근무 미충족 시간에 대해 근태 등 소급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일반)]

[관련자]

소속 (지적 당시)	직위	성명	근무 미충족 시간	현근무처
♠팀	●	D	#시간 ##분	☒팀
◆팀	♣	B	##시간 ##분	좌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회

직인생략